

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지방분권에 관한 시책 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,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
(안 제3조 ~ 제4조)

나. 지방분권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,

「지방자치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방분권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) ① 시장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방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
2.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
3.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의 지원)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
2. 지방분권 홍보, 활성화 추진 및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
3.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
4.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지방분권협의회 설치)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·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
2.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
3.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4.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

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미시의회의원

2. 지방분권 관련 공무원

3.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시민사회단체 등 지방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8조제2항제1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협의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
2.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
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

4.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협의회 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,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.

제14조(수당)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「구미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분권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~ 4. 생략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·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방분권의 기본이념)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

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⑤ 생략

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5조)
-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14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(안 제5조)
-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24백만원

미만으로 예상됨(안 제14조)

- 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
내 용	산출내역	금액
합 계		24,000
지방분권협의회	100,000원×20명×12회	24,000

※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: 70,000원(기본) + 30,000원(2시간이상 초과)

4. 작성자

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혜진 (480-6527)

소관 실 · 과		기획예산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김 용 학
	담 당	김 성 학
	담 당 자	김 혜 진 (480-6527)